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